


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

(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, 일부개정)

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,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,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.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(www.kmcca.or.kr)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.[편집자주]

▶▶ 개정 및 시행

- 개정일 : 2017. 1. 23, 시행일 : 2017.2. 1.

▶▶ 주요내용

-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
 - 계약목적물의 1배(추정가격 50억원 미만 0.7배) 이내 → 1/3배 이내

개정전

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

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

제한의 종류	계약 목적물	제 한 요 건	비 고
1.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	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•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 · 그밖의 공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계약목적물의 <u>1배</u> 이내(50억 미만 공사 0.7배 이내) • 규모 · 양 제한 예외 – 금액 제한
	물품 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수한 설비·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•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	

개정후

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

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

제한의 종류	계약 목적물	제 한 요 건	비 고
1.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	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 • 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 · 그밖의 공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계약목적물의 <u>규모 또는 양의 1/3이내</u> 단, 계약 목적물의 특성, 안전성,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/3 이상 1배 범위에서 <u>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</u>
	물품 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수한 설비 ·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•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	

●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

– 3~5일 → 3일 이상,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

개정전	개정후
<p>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</p> <p>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</p> <p>1.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</p> <p>나. 수의계약 요령</p> <p>1)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“제4절”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(<u>3 ~ 5일</u>)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.</p>	<p>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</p> <p>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</p> <p>1.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</p> <p>나. 수의계약 요령</p> <p>1)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“제4절”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(<u>3일 이상,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.</u>)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.</p>

●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

– 공사 계약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납부

개정전	개정후
<p>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</p> <p>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· 해지</p> <p>1. 지연배상금</p> <p>아. <신설></p>	<p>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</p> <p>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· 해지</p> <p>1. 지연배상금</p> <p>아. <u>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체 계약 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.</u></p>